

제400회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정기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2년11월24일(목)

장 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50)
2.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01)
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0)
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9)
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85)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45)
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200)
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46)
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8)
1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64)
1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7)
1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27)
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65)
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07)
1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47)
1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1)
1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3)
18.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23)
1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65)
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9)
2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62)
2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24)
2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0)
2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8)
2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21)

상정된 안건

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50) 2
2.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01) 2
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0) 2
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9) 2
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85) 2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45)	2
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200)	2
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46)	2
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8)	2
1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64)	2
1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7)	2
1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27)	2
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65)	2
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07)	3
1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47)	3
1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1)	3
1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3)	3
18.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23)	3
1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65)	3
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9)	3
2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62)	3
2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24)	3
2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0)	3
2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8)	3
2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21)	3

(10시00분 개의)

○소위원장 조승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비교적 쟁점이 적어서 위원님들간에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률안을 정부 부처 그리고 각 의원실 그리고 전문위원들과 함께 정리한 법안들이 7개 정도 있습니다. 그 법안들을 먼저 논의하고 처리한 뒤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법률안을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8일 자로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동의 청원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한 처리 속도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50)
2.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01)

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0)
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9)
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85)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45)
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200)
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46)
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8)
1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64)
1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7)
1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27)
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65)

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0407)
15.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47)
1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1)
1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3)
18.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23)
1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365)
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49)
2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62)
2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24)
2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0)
2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58)
25.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21)

○소위원장 조승래 의사일정 제1항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5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과기부와 방통위 소관 법안심사를 위하여 박윤규 과기부 2차관과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배석한 정부 관계 직원들께서는 답변하는 경우에 숙기를 위하여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면 소위 자료별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문을 통하여 정리되면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언론 스케치 끝나셨으면…… 효율적인 소

위원회를 위해서 회의 공개는 이것으로 하겠고요. 다음번 소위 같은 것 할 때 혹시 우리가 언론에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언론 공개를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기 전에 김영식 위원님과 박성중 위원님께서,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께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지난번 1차 회의에서 이미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인사를 하셨으니까—참석하신 위원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 반갑습니다. 어쨌든 법안소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좋은 안건이 도출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다음으로 박성중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중 위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좀 늦게 왔습니다.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다음으로 허은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은아 위원 저도 잘됐으면 좋겠고 국민들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과방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감사합니다.

서로 잘해 보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논의는 치열하게 하되 가능하면, 또 속도감도 필요한 거니까요. 같이 협력해서 좋은 소위원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소위 자료 4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보통신공사업법 김영식 위원님 안은 현행법상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고장설비가 방치되는 등의 관리 미흡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의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이고, 의사일정 제2항 김정호 의원안은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감리를 정보통신 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는 현행법에서 설계와 감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를 정보통신공사의 설계와 감리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에 대하여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건축사가 설계·감리 업무를 수주하고 정보통신 설계·감리 업체 등은 하도급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로 인해 설계·감리의 품질 저하, 부실시공 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정보통신설비가 전문화·고도화되어 설계·감리에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므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국토부는 제도개선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정보통신 분야에서 독점적으로 설계나 감리를 수행하기에는 전문업체나 인력이 충분하지 않으며 전기와 통신 간 복합설비가 많은 상황이므로 정보통신기술자에게만 관련 공사의 설계·감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건축사협회, 전기기술인협회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동 개정안과 함께 김정호 의원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토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다음 11쪽을 보시면 안 제37조의2제1항은 과기부장관이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음 12쪽을 보시면 안 제37조의3 제1항 및 제2항은 정보통신설비의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관리주체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다음 13쪽을 보시면 관리주체를 약칭하면서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관리주체의 성능점검 실시 및 점검기록 작성 의무화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나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을 정보통신공사사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37조의3제2항 후단에 대하여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서 용역을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의 역무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들어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용역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산자부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의견이 있으나 과기부는 유지보수가 장애 원인을 발견하고 점검하는 등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수리·복구 업무를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 대행은 현행법 제2조 2호에서 규정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공사의 수행주체인 정보통신공사사업자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개정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16쪽을 보시면 안 제37조의4제1항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공사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행법 제3조에서 공사사업자로 약칭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서와 같이 유지보수 등을 공사사업자가 아닌 용역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과기부는 개정안이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안 제2항 및 제3항은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며 선임 또는 해임 시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을 보시면 안 제5항은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이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0쪽을 보시면 안 제78조 1항은 37조의3에 따른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 작성한 경우,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37조의4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자 등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1쪽을 보시면 제6호의6으로 안 제37조의4제5항에서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후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이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3쪽을 보시면 안 부칙 제1조에서 시행일을 1년 후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제2조 중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 수정하였으며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는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입니다.

2개 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에 과기정통부는 동의합니다.

첫 번째, 김정호 의원님 안에서 건축사 이외의 정보통신용역업자도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강화되는 측면에서 설계·감리의 품질이 제고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은 동의하고 이게 건축사 이외에 정보통신용역업자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사분들의 우려는 저희로서는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11페이지, 김영식 의원님께서 정보통신 설비의 유지보수와 관리 기준의 수립, 성능점검 및 점검 기록의 작성과 관련해서 안을 내주셨는데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저희 과기정통부는 동의합니다.

16페이지, 김영식 의원님께서 유지보수 등의 업무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과 관련된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체계적으로 정보통신 설비를 관리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이하 과태료와 용어 정리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차관님, 지금 이 법이 여기서 통과되더라도, 산자부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는 반대의견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과방위에서 통과를 하더라도 법사위에 올라가면 보류가 되거나 또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안이 단순히 유지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해서 점검이라든지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한 수리 부분까지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유지 관리 업무만 하고 있는 엔지니어링협회라든지 이런 쪽의 의견보다는 정보통신공사업자나 또 용역업자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법사위에 가면 분명히 태클이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 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그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필모 위원님.

○정필모 위원 보면 2010년도, 특히 김정호 의원님 안 같은 경우 감사원의 정보통신설비 설계 및 감리 업무와 관련해서 건축사 독점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이미 지적이 됐고 설계·감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 전문성을 가진 용역업자가 정보통신 시설에 대해 설계·감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감안을 한다면 이 안은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법안 다 어떤 전문성을 감안해 가지고 발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수정한 대로 경과 기간이라든지 신고대상, 과태료 경과조치 이런 것만 삭제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지난번에 우리가 카카오 사태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사실은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설계·감리·시공·유지관리 사실 이런 것들이 갈수록 그 필요성은 점점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법의 취지는 다들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 다만 일부 직역에서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설득해 나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의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정보통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소위 자료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이형석 의원안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에 대한 통지를 받은 관계기관 등은 신고접수 사실을 상호 공유하고 협력하여 피해확산 방지와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의사일정 제4항 조정식 의원안은 정보통신기반 보호위원회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며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시설을 지정하지 않을 때에는 재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 발생 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은 관계기관 등은 그 사실을 과기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3조 제5항 신설을 통해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에 정보통신기반보호자문단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음 5쪽을 보시면 예외적인 경우 지정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지 않을 때에는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6쪽을 보시면 제13조 1항 후단 중 침해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 등은 과기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통지받은 사실을 즉시 알리고 공유되는 정보 중 민간기업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우려가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공유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8쪽을 보시면 시행일을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하므로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과기정통부는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먼저 3조 제5항의 정보통신기반보호자문단 신설과 관련해서는 보호위원회의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동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의 보호위원회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 만드는 것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보호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6페이지의 침해사고 통지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을 통할하고 있는 과기정통부와 공공 부문을 통할하고 있는 국정원에 관련 사실이 알려지고 그런 사실들이 공유되어서 침해사고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는 공감하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행시기는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하므로 6개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하기 전에 윤두현 위원님께서 오셨으니까……

인사하셨거든요. 통계상 한 10초 정도 하셨습니다.

○윤두현 위원 제2법안소위에 올라온 법안이 알찬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다 같이 하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좋은 성과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감사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지금 국가정보원에서는 불수용으로 나와 있습니까? 조정식 의원 법안을 보면 국가정보원에서 불수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 현행법의 해석으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은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동일하게 침해 통지를 받는 기관에 포함되어 있어 개정의 실익이 없으며 불필요한 행정 업무만 가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가 관계행정기관에는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관계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국정원이나 과기정통부를 명확히 얘기하기보다는 그 시설과 관련된 주무 행정기관을 의미하는 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하는 의미에서 법에다 주무 행정기관 이외에 과기정통부와 국정원에도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통보를 받으면 관계되는 기관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그런 체제를 갖는 게 바람직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 해석상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 부분들을 저희들은 좀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리고 국정원에서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가지고 침해사고 신고 내용을 수사기관 등과 항상 공유할 경우 관리기관의 재량권이 침해될 수 있고 신고 자체에 소극적으로 임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 또 침해사고 내용에 기관 내부정보,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신고수리기관의 직무범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 공유는 부적절하다고 국정원에서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침해자의 추적과 수사에 필요한 정보들이 수사기관과도 공유되는 그런 필요성은 저희들은 인정된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들이 수정의견에 동의한 것은 민감한 부분의 정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민간기업의 경우 신고를 꺼리거나 부담을 느낄 수 있어서 저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상호 공유하도록 하게 되면 그런 우려는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통령령을 만들 때 어떤 사실들을 공유할지에 대해서는 업계나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범위는

대통령령에 따라 위임을 한다 그러니 그 위임하는 내용을 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 부분을 잘 명심해서 가지고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영식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행령 작업을 할 때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셔서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시는 걸로 의견을 저희들이 모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작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소위 자료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기통신사업법 변제일 의원안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를 현행 10명 이하에서 30명 이하로 증원하고 지원조직을 신설하며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제45조의2제2항은 신속한 분쟁조정을 통해 신청인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를 증원하는 것이고, 제4항에서 특정 인물이 지속적으로 위촉될 경우 중립성이나 다양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6쪽을 보시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사무조직을 두되 분쟁조정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두는 별도의 위원회인 점을 감안하여 방통위 소속으로 사무국을 두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7쪽을 보시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취지로 직권조정결정 제도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만 8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 제4항은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당사자가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정서의 정본에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자율적 분쟁해결절차인 조정제도의 입법취지와 충돌되므로 이 경우 불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을 보시면 2의2는 직권조정결정 성립시 조정절차가 종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 안형환입니다.

통신분쟁과 관련된 국민 불편 해소에 필수적인 법안입니다. 그래서 수용 의견이고요.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통신업계를 보면 타 입법례와 비교 시에 자율적 분쟁해결 절차라기보다는 재판을 대체하는 준사법적 절차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안형환 직권조정 말씀하십니까?

○김영식 위원 예, 통신업계에서는 불수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불수용 의견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안형환 그래서 저희들이 수락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불수락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바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피하도록 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박성중 위원님.

○박성중 위원 전체적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이게 사법적 권한이라든지 상당히 권한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3연임까지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연임 정도로, 한 4년 정도로 하면 서로 교대를 해 가

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6년쯤 하면 너무나 한 사람이 계속한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3연임이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안형환 두 차례만 연임하고……

○박성중 위원 두 차례입니까, 세 차례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안형환 두 차례 연임입니다.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박성중 위원 6년으로 해 놔는데 그걸 4년으로 해야지.

○소위원장 조승래 수정의견이 4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수정의견이 6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안형환 수정의견이 6년입니다.

○박성중 위원 6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 하는 것이, 한 번 하고 연임만 한 번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안형환 저희들이 3연임을 생각했던 것은 현재 위원들의 가용 인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유용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3연임을 했던 건데요. 위원님 뜻이 그렇다면 국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통신분쟁 관련해서 요사이에 굉장히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서로 들어가려고 많이 합니다. 실제 밑에서 보고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밑에서 전반적으로 커트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실제 인원을 10명에서 30명으로 늘렸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래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30명 이하를 20명 이하로 좀 조정하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위원장 조승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윤두현 위원님.

○윤두현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게 통신 분야의 사법부 역할을 하는데 아무래도 법률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주로 가용 인원이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로스쿨도 하고 엄청나게 법률 전문가들이 많은데 가용 인원이 많지 않다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런 판단을 내리신 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안형환 이렇습니다.

작년에 1200건이 들어왔는데 9명입니다. 한 사람 당 120건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앉아서 1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안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일주일 내내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신청인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분들은 그분들이 이의를 제시하시면 그걸 다 들어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 일주일까지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선호하지 않습니다, 많은 조정위원들께서.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박성중 위원님.

○박성중 위원 부위원장님, 다시 한번 스크린을 해 보시고요. 실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그걸 공개모집을 하면 상당수 많은 인원이 응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권한을 주는 어떤 조직, 내가 어느 조직을 이야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6년 주니까 완전히 권한이 보통 권한이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그 사람들을 꼬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준사법적 권한을 주는 데는 가능한 한 짧게 하는 게 좋다. 이 사람들이 국민의 선택을 통해서 됐다면 그것은 법적 권한이 보장되어야 되겠지만 단순한 임명 형태의 그런 권한을 이렇게 오랫동안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안형환 예,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차례 연임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다음번 소위에서 논의를 할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인원 확대를 어느 정도까지 할지 연임을 어떻게 할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조정을 하셔서 다음에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안형환 그 의견들을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것이 30명 확대를 한 20명 확대 정도로 하자, 그다음에 연임까지만 하도록 하자. 이것 다 수용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안형환 30명은 저희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연임은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연임 조항만 정리가

된다면 위원님들 다 동의 가능하신 겁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그 부분만 조정을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법률안은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지난 15일 우리 소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법률안과 동일한 제명이기 때문에 두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전체회의에 제안할 예정임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소위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박성중 의원님 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하는 자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신청인의 권리를 보다 명시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포털사는 삭제 등의 요청에 대한 처리 경과 및 결과를 신청인이 기재한 전화, 이메일, SMS 등을 통해 통지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이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방통위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입니다.

권리침해 피해자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용하고요.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위원님.

○박찬대 위원 정보 게재자에 대해서도 처리 결과를 알려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의를 제기한다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삭제하게 되면…… 정보를 게재한 사람한테도 알려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위원장 조승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안형환 저희는 본래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박찬대 위원 제 의견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안형환 예.

○박찬대 위원 그러니까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는 자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처리가 있게 된다고 하면 최초의 정보 게재자에 대해서도 그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알려 주는 게 쌍방 간에 맞지 않나 싶거든요.

○소위원장 조승래 정보 게시자에 대해서요?

○박찬대 위원 예.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안형환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정보 게재자는 신청인과 달리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지금 박찬대 위원님의 의견은 어쨌든 정보 게시자에 대해서도 통보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이고, 방통위도 그것에 공감하신다는 건데, 논의 과정 속에 수석전문위원님은 그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의견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안형환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박찬대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박성중 위원님.

○박성중 위원 본래 권리구제는 요청하는 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좀 광범위한 이해관계인의 보호 이런 차원에서는 게재자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럼 박찬대 위원님께서 별도의 법안을 내시면 어떨까요?

○박찬대 위원 여기서 이것을 수정하지 않고요?

○소위원장 조승래 지금 법안 내신 분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박찬대 위원 내신 분이 그렇게 하시자고 하니까 문구를 적절하게 고치면 되지 않겠어요?

○박성중 위원 여기서 수정의견으로 받아들인다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안형환 예, 받아들일겠습니다.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럴까요? 그러면 그렇게 수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제가 방통위와 협의해서 자구는 정리해서 위원장님한테 나중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어쨌든 의결은 하고 자구는 그렇게 하시고 전체회의 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예.

○소위원장 조승래 그리고 발의하신 박성중 의원님께 보고해 주시고요.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예.

○소위원장 조승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바와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법률안도 제5항과 마찬가지로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지난 15일 우리 소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법률안과 동일한 제명이므로 두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전체회의에 제안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소위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부 제출 방송법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설치하는 시청자위원회는 이용약관과 채널 구성의 다양성 등에 관한 의견을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며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가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제작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시청자 평가프

로그그램의 제작비를 지원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 제87조는 매출액 또는 가입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6쪽을 보시면 안 제88조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0쪽을 보시면 제89조제3항제2호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의 제작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1쪽 이하는 법령의 한글화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정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시청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시청자위원회의 설치와 권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런 안을 제안드리고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시청자위원회의 설치와 활동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안형환 예,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찬 위원님.

○윤영찬 위원 이 법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범위가 한정되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매출액과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에 있는 중소 SO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MSO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영찬 위원 그러니까요. MSO라는 대상이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SO들한테 이런 의무를 부과한다 해도 실효성이 없어요. 그것을 이행할 능력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법의 적용 대상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수행할 수 있는

그리고 실효성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만 법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박성중 위원님.

○박성중 위원 지금 현재 해당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총 몇 개나 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14개 정도……

○박성중 위원 14개 중 이 대상을 몇 개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구체적인 작업을 해야겠지만 지금 현재 MSO를 5~6개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좀 큰 데만 하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박성중 위원 그러면 기준도 아직 정해 놓지 않고 법부터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한 것 아닌가?

그다음에 위성방송사업자는 총 몇 개나 되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위성방송은 하나입니다.

○박성중 위원 그럼 그것은 그냥 해당되는 걸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저희들은 가입자 수와 매출액을 봐야겠지만 지금 위성방송 가입자 수가 200만 명 좀 넘기 때문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을 만들 때는 그 하위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어느 정도의 영향, 플러스 영향과 마이너스 영향이 어떻게 있을지도 다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밑의 게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무리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걸 우리한테 보고하고 나서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필모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필모 위원 지금 보면 위성방송하고 MSO가 주로 해당되는 것으로 추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IPTV 플랫폼 사업자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IPTV 관련된 법안도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오늘 논의

하는 안건에는 빠져 있고 아마 다음번에는 같이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필모 위원 저는 형평성 차원에서, MSO가 들어가는데 그것보다 가입자 수가 더 많은 IPTV 사업자가 안 들어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위원님, 정부에서는 방송법과 IPTV법을 같이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소위 논의 순서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있습니다.

○정필모 위원 알았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박성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 법이 다루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가지고 다음번 논의할 때 보고해 주시고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박성중 위원 작다고 무조건 뺄 수 있는 건 아니고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작은 데도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그분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여지가 되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고 나서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예, 알겠습니다.

윤두현 위원님.

○윤두현 위원 유료방송사업자가 2017년부터인가요, 재허가 기준에 시청자위원회 운영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재허가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윤두현 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그래서 이번에 재허가 조건이 아니고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안을 만들어서 제출한 것입니다.

○윤두현 위원 다음에는 MSO, 그러니까 위성방송을 늘리면서 방송발전기금을 이 시청자프로한테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 보도채널이나 종합편성채널에서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공익성이라든지 회사 규모가 흑자가 안 나더라도 만들어야 될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방발기금 지원 나름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MSO, 위성방송까지 방송발전기금을 지원해야 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MSO하고 위성방송은 사실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송사는

아니고 플랫폼 사업자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두현 위원 아니요, MSO에서 자기들 시청자위원회 프로그램 만들 듯 해야지요. 그리고 MSO는 자기 채널 하나 내 가지고 지역 뉴스를 보낸다든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위원님, 10페이지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 대한 의무는 제87조제1항제1호가 종편사업자고요, 제2호가 보도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새로 만들어서 4호 사업자가 되는데 4호 사업자는 이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윤두현 위원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거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예, 해당 안 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5쪽에 보면 현재 MSO하고 IPTV, 위성방송 등이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현황들이 있네요. MSO 5개사, IPTV 3개사다 하고 있고 위성방송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어쨌든 재허가 기준에도 넣겠다고 한 것이며 법적 근거를 만들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맞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운영찬 위원님.

○운영찬 위원 저는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상식적인 질문입니다만 이게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는 뭐가 달라져야 되지요? 플랫폼 사업자는 어쨌든 자기들이 직접 제작을 하지 않고 다른 방송에서 또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쪽에서 수주해서 그걸 보여 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시청자들은 과연 어디에다가 그것을 이야기해야 되는지,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 내에 시청자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는지 그게 약간 의문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마 미디어의 특성에 맞게 시청자위원회가 운영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되는 형태를 보면 플랫폼 사업자기 때문에 이용요금이라든지 아니면 전송, 그러니까 프로그램 품질과 관련되는 사항들 그리고 요금에 있어서 채널의 다양성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주로 이 플랫폼 사업자 쪽에서 담당하게 될 거고 방송 내용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극히 일부분, 예를 들면 지역 채널이라든지 자체

편성 채널에 관련되는 부분에만 한정될 것으로 저희들이—지금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박성중 위원님 마지막 토론으로 이 건 정리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종합유선방송사업자나 위성방송사업자나 IPTV나 기타 이런 것 관련해서 일부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방송통신발전기금 타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뜻은?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왜 방송통신발전기금 여기에 가야 되는지 또 다른 TV와의 형평성 관계라든지 그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세세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알겠습니다.

2차관님 한 말씀만 하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박윤규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 잘 준비해서 다음번에 IPTV라든지 다른 현재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시청자위원회하고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사전에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건은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기부 공무원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등입니다. 법률 제명은 다름니다만 다음 의사일정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안 등에 대한 의결은 동일 제명의 법률안 심사 결과와 법률안 간의 체계를 고려하여 법률 제명별로 나중에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18일 자로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25항까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의사일정 제8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25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18건의 방송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 대상 안건은 총 18건으로 효율적 심사를 위해 박성중 의원님 안, 허은아 의원님 안, 전해숙 의원님 안 및 2022년 발의 정필모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소위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정청래 의원님 안과 2020년 발의 정필모 의원님 안은 2021년 2월 법안소위 심사자료를 참고하도록 배부해 드렸습니다. 또한 18건의 법안 주요 내용을 2장짜리 표로 요약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 자료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관례적으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서 이사의 추천 및 임명에 있어 정치적 배분이 이루어져 왔고 이에 따른 정치적 후견주의 등의 부작용이 지적되었으며 공영방송 사장 임명 방식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음에 따라 방송의 독립성·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개정안의 네 가지 주요 쟁점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 공영방송 사장의 임면 및 제청 절차,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방안, 사장후보자 결정 절차 등입니다.

먼저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6쪽을 보시면 방통위법 정필모 의원님 안은 KBS, 방문진, EBS의 운영위원 임명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현재 공영방송 이사회 대신 운영위원회를 신설하며 각 공영방송 운영위원을 2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운영위원 구성 방식은 요약표 및 소위자료 6쪽부터 8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을 보시면 KBS 이사 관련 내용이 10쪽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님 안은 여당 7명, 야당 6명을 각각 추천하여 총 13명의 이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허은아 의원님 안은 여당 6명, 야당 6명, 방통위 3명을 각각 추천하여 총 15명의 이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해숙

의원안은 여당 4명, 야당 3명, 방통위 2명, 미디어 관련 비영리단체 2명 등을 각각 추천하여 총 13명의 이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개정안은 이사 추천 시 전문성과 대표성, 지역성 등을 고려하여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음 19쪽을 보시면 KBS 사장 임면 및 제청 절차입니다.

현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중 의원님 안은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제청하고 인사청문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되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KBS 사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혜숙 의원안은 사장추천위 대신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필모 의원님 안은 시청자사장추천평가위원회가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이를 의결 및 제청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을 보시면 사장추천위 또는 사장평가위의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박성중 의원님 안은 사추위를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반면, 전혜숙 의원안은 150명 이상 200명 이내의 홀수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필모 의원님 안은 시청자사장추천평가위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영방송 운영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시 12쪽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사장후보자 결정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박성중 의원님 안과 정필모 의원님 안은 공통적으로 이사회가 KBS 사장 임명제청을 하는 경우에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필모 의원님 안의 경우 2회 이상 부결될 경우 운영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공론조사 방식을 통해 임명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부터는 방송문화진흥회법, 45쪽부터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조문대비

표입니다.

각 개정안의 전반적인 취지는 방송법 개정안과 유사합니다. 다만 현재 KBS와 달리 MBC 사장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임명되고 있으며 EBS는 방통위원장이 임명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안형환 동 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여야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 주시면 그 결과를 존중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한 두 장짜리 요약표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논의해야 될 일종의 범주를 보면 이사회의 구성, 이사의 숫자를 어떻게 할 거냐, 현행 11인 9인 9인으로 돼 있는 것을 대부분 다 확대하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거냐, 그리고 이사의 추천을 누가 할 것이냐, 이사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사장 임명제청 절차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사회의 의결 요건을 특별다수제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 국민참여 방식의 공론조사 방식을 제안한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의 구속력을 보다 강화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방안에 대한 것 등등.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사장 임명제청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이니깐 혹시 위원님께서 토론을 하실 때 그것과 관련된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박성중 의원님, 허은아 의원님 또 정필모 의원님 이렇게 여기 소위 위원들 중에서 세 분이나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를 하겠고요.

쟁점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야 될 테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회 구성, 사장 임명 절차 그렇게 해서 한번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결정만 하면 되겠네.

○박성중 위원 준비가 안 됐으니깐 내가……

○소위원장 조승래 박성중 위원님.

○박성중 위원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방송법 관련해서 참 오랜 시간을 끌어 왔습니다. 몇 년이 걸렸는지도 모르고, 여야 입장이 바뀌면서 계속 바뀌어 왔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한 네댓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필모 의원님 안에 운영위원회 25인 안이 있는데 이 안이 그렇게 좋았으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또 국회에 다수 있을 때 그때 통과시키지 안 시켜 가지고 왜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지금 통과시키면 되지요.

○박성중 위원 우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25인 운영위원회 이 안이 이대로 가는 건 아니고 또 변경이 되겠지요, 만약에 채택된다 하더라도. 이 안대로 가면 민주당이나 민노총의 언론노조를 위한 어용방송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사실 제 안은 저희들이 야당일 때 제시했던 안이고요. 전반적으로 워낙 여야가 싸우고 이것 가지고 그것을 하기 때문에 뭔가 공통분모를 하자는 차원에서 11인에서 1석씩 늘려서 13인으로 해서…… 여기는 사장 추천을 3분의 2로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60% 정도로 다운시켜서 뭔가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협상이 안 될 때는 60일 기한을 줘서 그 안에 안 되면 다른 걸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넣어서 정말 여야가 이걸 가지고 끝까지 서로 대립이 아니라 어느 정도 융합할 수 있게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제시했던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5인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저희들 안은 각 개인의 안입니다. 허은아 의원안이나 제 안은 우리 당과 협의된 안이 아니고 그 당시 야당 의원이었을 때 각 개인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싸움만 있는 과방위에서 앞으로 좀 낫겠다는 차원에서 제시된 안이고.

25인 운영위원회는 원래는 김희재 의원이 100인의 국민추천위원회라고 해서 민주당에서 나왔던 안입니다. 그래서 100인에서 사장도 추천하고 여러 가지 쟁점을 하자 해서 제기되다가 다시 정필모 의원이 하셨나요, 독일의 평의회 방식으로 해서 25인 운영위원회 개념을 일단 제시를 했고, 그것이 민주당의 당론으로 올해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전체의 하나의 의

견이다 이런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의견은 다 개인의 의견이다. 그래서 우리 당도 한번 의견을 모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시간을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제시한 25인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세계 각국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세계 각국에 이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독일의 평의회 제도를 가져오신 것 같은데 독일 평의회 제도는 50에서 70인 사이 정도로 되도록 구성하고 있고, 이 독일 평의회가 옛날 나치 시대 것인데 나치 정권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서 저 밑의 기층민중이라 할까 자기편 그런 개념에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자리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25인 운영위 구성 내용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구성 운영을 이대로 민주당이 제시한 안으로 한다면 거의 과반수 이상, 3분의 2까지도 친민주당 세력, 친민노총 세력으로 장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랬다가는 이것은 악법 중의 악법이다, 영구 장악법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국민청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민단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MBC 공익노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공영언론 미래비전 100년위원회라든지 자유언론국민연합이라든지 KBS 노동조합도 마찬가지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 각종 시민단체, 반대하는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이틀에 된 것이 아니고 지난 전반기에서도 언론중재법하고 이것하고 같이 묶여서 굉장히 까다로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영찬 위원님.

○윤영찬 위원 박성중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박성중 의원님이 제출했던 법안도 정치적으로 대결구도가 만들어졌을 때 사장 선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 끝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는 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차적으로는 방송의 영향력이 과거와 같지 않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등장하면서 미디어의 정의 자체도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독 방송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에서 추천을 하는 인사들로 이사회가 구성되고 그리고 여야가 바뀔 때마다 숫자가 바뀌고 그러면 방송사의 구성원들, 방송사 내부 권력마저도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야가 바뀌면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은 모두 다 백안시하고 거부해 버리기 때문에 정책의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 후견주의가 지속되는 한 이 병폐를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KBS나 MBC나 사실은 거기의 모든 인원들이 같이 회사를 위해서 화합하고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파들은 일을 안 해요. 그러면서 숫자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를 할 거냐?

여기 숫자에 대해서 또는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여야 간 타협의 여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만 적어도 이제는 정치에서 방송의 손을 놔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방송사가 자생력을 가지고 자기 의사결정에 따라서 방송을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만큼 이제는 그 결단만큼은 좀 해 달라. 그래서 정치권이 이사를 추천하는 방식만큼은 바뀌 보자. 그리고 이사회든 운영위원회든 어디든 여기에 추천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는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신 정치권이 이사를 추천하는 이 방식에서는 이제 벗어나자는 말씀을 저는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허은아 위원님.

○허은아 위원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박성중 간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당론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이요. 처음에 발의했던 제 법안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한다, KBS는 국민 눈치 보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것에 대한 개정안이었습니다.

저희가 부끄러워 해야 될 것은, 여당일 때는 여당 입장, 야당일 때는 야당 입장 논의하면서 계속 정치적인 싸움만 하게 되면 이 문제는 해결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법안을 보면 제가 제안했던 것과고는 조금 다른 지점들이 있기는 합니다. 우선 저는 이사회 관련해서 보시다시피 6명, 6명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야의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여 6명, 야 6명과 방통위 추천을 얘기했었습니다. 방통위가 추천을 할 때도 정치 상황에 따라서 국회 여야 구성비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정치적 변동에 영향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 전제였고 또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여당이라든가 제1 야당의 추천을 명문화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의 전문성을 위해서 방통위 추천 몫을 명시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수신료가 분리 징수돼야 된다는 것을 법안에 넣었었는데 그건 우선 다른 법안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당에서 말씀하시는 기본적으로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다운 방송이 되려면 오해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겁니다. 저희 여당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25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 개최하는 25명을 임명하는 것 자체에 대한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운영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르게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우선 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무조건적인 여당을 위한, 야당을 위한 그런 법안의 논쟁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고민정 위원님.

○고민정 위원 지금 현행법에 보면 이사회 추천에 여야 몫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박성중 위원님 안도 그렇고 허은아 위원님 안도 그렇고 정치적 후견주의를 아예 그냥 못 박으신 건데요. 아마 현실적인 것들을 그대로 반영하셨다는 생각인데.

방송의 독립성을 고민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여야가 뗏이 될 것인지는 추후에 논의를 하더라도 여야가 몇 명씩을 나누자 하는 것 자체가 방송의 독립성은 정치인들만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국민 눈치 보게 하자’ 또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여야가 모두 공히

하고 있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그 몫을 최대한 줄이고 시민 몫을 얼마큼 더 많이 반영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몇몇 위원님들이 사장추천위원이라는 제도를 여기다 넣어 놓으셨는데, 이 부분을 얼마큼 더 많이 늘릴 것인가 그리고 사장추천위원회의 결정과 또 이사회의 결정을 몇 대 몇의 구조로 할 것인가. 아무래도 시민들에게 돌려 드리려는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사장추천위원회의 몫이 훨씬 더 크게 반영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논의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의 당론이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글썄요, 저희 소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하면서 때로는 조정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민주당 위원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보면 여야 위원들 간에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공통사항은 좀 추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면 좀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여야 위원들 공통으로 나온 게 사장후보자 결정 절차에 있어서—특별다수제지요—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 부분은 공통으로 나와 있으니, 그것은 어차피 이견이 없는 것이니 일단 제쳐두고 나머지 부분들, 국회의원들을, 정치권을 얼마큼 몫으로 넣을 것이냐 또 시민의 몫은 얼마큼으로 넣을 것이냐 또 사장추천위원회와 이사회의 사장 선임에 있어서 6 대 4로 할지, 7 대 3으로 할지, 거꾸로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좀 속도감 있게 빨리할 수 있을 거란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필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필모 위원 우선 법안을 발의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 부분 오해가 있는 측면도 있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더군다나 제가 공영방송에서 근무를 해 왔던 사람으로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폐단을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제가 정한 원칙은 그겁니다. 법안을 내는 데 있어서 정한 원칙의 첫 번째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원래는 배제하자는 거였는데 국회의 대표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회에도 추천 몫을 두되 정치적 후견주의는 배제가 아니라 최소화하자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공영방송의 주인은 시청자인 국민들이지요. 그러니까 국민의 의견을 가능하면 지배구조상에서 이사든, 특히 사장의 경우에 사장을 선출하는 데 최대한 반영을 해 보자는 게 두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영방송에 이러한 지배구조를 해 주는 데 따른 지나치게 정치권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감시·관리 감독의 대상에서 상당 부분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공영방송의 경우 감사원의 감사도 받고 방통위의, 규제기관의 규제도 받지만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렇다면 추후 보완과정에서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지금보다 훨씬 강화하고 거기에 따른 경영진과 직원들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논의를 하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민단체를 제가 제 법안에서 배제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관련해서는 이념적 스펙트럼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 선정을 둘러싸고도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방송 직능단체를 집어넣었는데 그것조차도 박성중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어느 특정 이념적 성향이 있는 단체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면 그것도 배제하는 방법도 논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안이 저는 원칙은 제시하지만 세부적으로 그게 다 지고지순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독일의 경우는 우리하고는 달리 시민사회가 우리보다는 훨씬 더 앞서서 잘 정착이 돼왔기 때문에 다양한 시민 제 세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정당도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소수민족의 대표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적 상황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 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너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단순화해 가지고 숫자도 줄이고 그런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대표성이라든지 또 특정 성이 너무 소수화되는 걸 방지하는 방법, 그다음에 가능하면 다양한 사회 전문가집단 내지는 시민단체가 아니더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얼마든지 논의의 장이 열려 있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연성 있게 이 법안심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을 주신다면

얼마든지 여기서 논의하고 더 보완 입법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명칭과 관련해서도 MBC 방문진의 경우에는 재단이기 때문에, 재단에는 반드시 이사를 뒀다 된다는 법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명칭은 그냥 기존대로 이사회로 다시 환원시켜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 구성을 어떻게 해서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하고 시청자인 국민들한테 공영방송을 돌려 드리느냐 여기에 큰 방향·목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내신 법안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보완해서 저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결론을 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박성중 간사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박성중 위원 제가 과방위에서 5년 동안 이 관계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민정 위원님이 ‘특별다수제는 이견이 없다’ 이러는데, 이것은 운영위원회를 채택하면 특별다수제가 채택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에 차이는 있다, 그래서 어느 방식이 채택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KBS는 11명, 7대 4, MBC나 교육방송은 6 대 3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안정적 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돼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구도가. 그런 걸 완전히 파괴하겠다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지금 현재 KBS의 경우 7 대 4로 되어 있지만 정치인들만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방송전문가, 교수들 이런 사람들로 다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치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독일 평의회도 정당도 들어 있고 또 각 주의 대표들도 다 들어 있습니다, 각 주의 대표. 그다음에 시민단체도 또 소수도 일부 들어 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편파적으로 운영되다가 요새는 많이 안정화돼 가지고 독일이 상당히 우리의 대표 그걸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들도 정치적 후견주의, 결코 생각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앞으로 운영위원회 제도가…… 저희들은 반대합니다마는, 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냐 하면 25명 중에 8명이 국회 추천입니다. 그중에 대통령 소속은 4명 이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명은 무조건 야당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방송협회, 종사자 대표 2명씩, 그다음에 한국기자협회, PD협회, 방송기술인협회 1명 해서 7명이 다 성향이 딱 보면 아는 데입니다.

그다음에 시청자위원회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관련 단체, 뭐 KBS나 단체 7명인데 그것도 직원 중에 상당수가 노조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시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4명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2명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 구성대로 한다면 이견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이 안이 만약 선택되면, 우리하고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는 나오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악법 중의 악법이다’, ‘노영방송’, ‘민주당이 영원히 장악하기 위한 방송법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하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5인 운영위원회는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좀 더, 허은아 의원 안이라든지 제 안도 우리 당과 다시 협의해서 당론으로 같이 내 가지고 같이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허은아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고민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허은아 위원 우선은 공영방송은 공영방송 다 워야 하고 국민께 돌려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같은 것 같아서 다행이다, 그리고 ‘좀 더 고민할 수 있고 논의의 장을 펼쳐 봤으면 좋겠다’라는 정필모 위원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혁에 착수한다라는 성명서 내신 것 같은데, 함께하셔야지 더불어민주당만 해서 되겠습니까?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도 같다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2020년도와 21년도에 사실 여야 추천 방식을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그때도 상당히 반대를 했었고, 국민추천이사제를 말씀하시다가 그게 운영위원회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때 가장 중시했었던 게 국민이 추천해서,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야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다 국민께서 뽑아 주신, 선출된 위원님들 아니겠습니까? 아까 박성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국민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추천해서 운영이 되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진짜 펼쳐 놓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구요.

아마도 여당이나 야당이나 같은 생각이다, 그 부분이 지금 같이 논의되고 있어서 다행이고, 이 부분은 심각하게 한 번 더 논의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고민정 위원님.

○고민정 위원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두 해 있었던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워낙 논의도 많이 됐었고요. 이미 시민들, 국민들께서도 이에 대한 결과를 궁금해하시는 지경까지 왔으니 언제까지 맨날 고민만 하고 숙고만 하실 건가.

그리고 죽 얘기를 들어 보면 저는 논의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거든요. 오히려 되게 반갑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치적 후견주의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고 분명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정필모 의원님 안이 제일 방대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안을 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 이미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바꾸는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굳이 운영위원회로 바꿀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이사회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적 후견주의에 찬성하지 않는다 하셨으니 여야의 몫을 이렇게 명시하지 말고 이것을 최소화하고 지금 25명 가운데 8명을 국회 몫으로 해 놓으시기는 했어요, 정필모 위원님께서.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여당 위원들께서 반대하신다면 이것도 저는 조정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가장 비판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협회들인 것 같아요, 협회·연합회 이런 곳들. 그런데 이것도 아까 정필모 위원님께서 조정 가능하다고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논

의의 장이 되게 많이 열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하자, 말자’ ‘의미가 어떻다’ 이것은 사실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몫을 더 많이 넣자는 것은 지금 여야 똑같이 나오는 얘기니 그러면 시민 몫을 어떻게 할 건가, 시민의 대표가 국회의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아예 빼자는 게 아니라 그것을 줄이고 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혹은 방송과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누구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여당에서는 방송협회나 기자연합회 이런 데의 사람들은 시민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보신다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넣으면 좋겠는가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

다만 저는 종사자들, 즉 KBS·MBC·EBS 그 종사자들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이사회 구성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서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가 서로 조금 이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은 대통령이 안정적 정책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은 아니지요. 그것은 어용방송이라고 부르지요, 보통은.

○박성중 위원 하나하나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공부 좀 하고 하세요. 말하는 것 보니까 정말 해도 해도……

○윤영찬 위원 아니, 발언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공부 좀 하고 하라니요? 지금 그렇게 모욕하시면 돼요?

○박성중 위원 공부 좀 하고 하세요.

○고민정 위원 박성중 위원님!

○정필모 위원 아니, 위원님……

○박성중 위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막 떠들어 제끼니까 듣기 거북합니다.

○고민정 위원 박성중 위원님……

○소위원장 조승래 발언권 얻고 얘기하세요, 지금 고민정 위원님 발언 시간이니깐.

○윤영찬 위원 아니, 왜 갑자기 끼어들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소위원장 조승래 잠시만요.

○정필모 위원 위원님, 지금까지 토론 잘해 왔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윤영찬 위원 왜 갑자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십니까?

○박성중 위원 지금 말하는 게……

○윤영찬 위원 동료 위원에 대해서 공부나 하고 오라니요. 사과하세요!

○정필모 위원 남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토론이 안 돼요.

○박성중 위원 상대방의 의견을 보고……

○윤영찬 위원 사과하세요!

○정필모 위원 사과하세요!

○소위원장 조승래 잠시만요.

○윤영찬 위원 사과하세요, 분명히 사과하세요!

○박성중 위원 당신은!

○윤영찬 위원 당신이라니!

○정필모 위원 아니, 당신이라니!

○허은아 위원 그냥 받지 않으시면 되잖아요.

○정필모 위원 토론이 잘되고 있는 마당에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세요!

○박성중 위원 정필모 위원, KBS에서 당신이 어떻게 했어? 윤영찬 위원은 어떻게 했어?

○윤영찬 위원 당신이 뭐야, 당신이!

○소위원장 조승래 잠시만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정필모 위원 서로 예의를 지키세요.

○소위원장 조승래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이 쪽도 그만하시고, 그만하세요.

○윤영찬 위원 공부나 하고 오라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고민정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소위원장 조승래 잠시만요, 잠시만.

○허은아 위원 하나하나 받지 마시고 그냥 우선 토론을 하십시오.

○박성중 위원 상대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그래야지, 무슨…… 말이 뭐야!

○윤영찬 위원 아니,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나요!

○소위원장 조승래 고민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성중 위원 충분히 할 수 있는……

○윤영찬 위원 동료 위원에 대해서 왜 공부나 하고 오라고 그래!

○박성중 위원 당신들이 그러면 25인 위원회를 왜……

○윤영찬 위원 당신은 공부했어?

○허은아 위원 토론하십시오.

○박성중 위원 민주당에서 통과시키지 방송법을 안 하고 지금까지 끌어 왔어, 그러면?

○정필모 위원 지금이라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박성중 위원 안 되지, 우리는 25인 위원회 여기에 대해서 절대 안 되니까……

○고민정 위원 박성중 위원님!

○정필모 위원 그러니까 토론을 하자는 거잖아요.

○허은아 위원 우리가 말씀 나누면……

○윤영찬 위원 의견은 의견대로 말씀하시라고요.

○소위원장 조승래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박성중 위원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차원으로 먼저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조승래 박성중 위원님, 그만하세요. 고민정 위원님 마저 발언 마무리해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 제가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대통령의 안정적 정책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건데 말끔하시는 것을 보면 제가 지적한 게 맞는가 보다 하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박성중 위원 우리 민주당 할 때도 안 했거든요.

○고민정 위원 계속해서 위원들 간의 이 논의 안에서는 상대방 위원을 존중하자는 얘기를 수백 번도 한 것 같은데 언제쯤 이게 반영될까 모르겠습니다만 공영방송의 의미는 정권과 권력을 견제하는 게 모든 언론의 정의일 겁니다. 여기 언론인 출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그것은 여당만 견제하는 게 아니라 야당도 견제하고 모든 권력자들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언론인 겁니다, 공영방송 포함해서. 그렇지 않고 대통령의 정책을 홍보하는 곳은 대통령실에 있는 홍보수석실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겁니다, 아니면 문제부나 이런 부처에서 하든지.

그래서 오늘은 이 어용방송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영방송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어떻게 권력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인가, 최대한 어떻게 시민들의 몫으로 국민들에게 돌려 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수고하셨습니다. 윤두현 위원님.

○윤두현 위원 정필모 위원님 아까 이야기 잘 들었고요. 그리고 고민정 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방송에 대한 무언가의 변화,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다 보면 방송이 마치 개혁의 대상인 것처럼 비칠 수가 있어서 말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방송 체제의 골격은 1980년 초반 5공 당시 우리 언론의 흑역사로 기록된 언론 통폐합 때 만들어진 그 구조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모순이라고 봅니다. 정 위원이나 윤 위원님 다 잘 아실 거예요, 다 언론에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 당시 민영방송 하나 없애고 KBS에 합치고 또 하나를 공영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영이 없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독재국가라는 비판, 해외의 시각이 두려워서 하나는 공영 하나는 무늬만 민영으로 해서 우리가 통상 표현하는 ‘공영’ ‘준공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왔어요,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로. 활자매체, 신문은 그때 만들어진 체제가 거의 완벽하게 해체됐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마는 윤 위원도 계셨던 네이버, 포털이 등장하면서 이른바 신문으로 보던, 배달되던 이 체제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발달로 활자매체는 바뀌었는데 이 방송은 그 골격이 유지되면서 많은 모순이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 방송을 만들 때 5공 당시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대통령이 국가 운영하는 데 편하도록. 그래서 거기에 이제는 변화가 와야 할 때가 됐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공영이지? 그러면 공영은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법에 공영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선거법에만 공영이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냥 KBS법, 방문진법이라는 거기에 개별법으로서 그냥 가지 공영이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이야기하기 전에 뭐가 공영인지 뭐가 민영인지 확고히 개념을 정립하고 공영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민영은 어떻게 자유를 줘야 되는지 이런 게 먼저 논의가 돼야 그게 순서가 아닌가 그

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영은 재원이 완벽하게 공공 부분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MBC는 왜 ‘준공영’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사실 재원은 상업 베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제해야 되고. 그다음에 KBS도 2TV의 광고 문제 이런 것도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거예요. 그 대신 공영은 공공 부분에서 재원을 공급받는 대신에 규제·감시 이게 좀 더 엄정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해야 할 일은 이른바 보다 공정, 보다 균형, 보다 중립에 더 많은 그게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시청률이라는 데 연연하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것보다는 국민이 필요한 것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그런 방송의 책무가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후견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우리가 중립을 만드는 방법은 pH 농도 5인가요, 그것을 모아서 중성을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잘 구분이 안 되니까 pH 농도 1과 9를 섞어서 5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되는데 안에 들어가면 늘 시끄럽지요. 그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그게 나름대로 중립을, 중성을 만드는 방법의 하나였다면 그것도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 그것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한 공영과 민영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하고 책무 이것을 정해줘야 운영찬 위원께서 아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표현이 죄송스럽습니다마는—공수가 바뀐다, 그렇게 하고 반대파는 일을 안 한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 저는 조금…… 반대파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자원·재화가 이른바 회사의 발전,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대로 분배되지 않는 이유가 더 크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치적 후견주의라고 이야기도 하고 어느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쪽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주요 보직에 가고 이러니까 내가 회사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서 이른바 회사에서 내가 갖고 싶은 자원·자원을 갖는 게,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표현이 거칠어서 죄송합니다마는—‘어디에 줄을 서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기본적인 문제가 더 크다. 그래서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으니 그것을 근본적으로 한번 우리가 논의해서 새로운, 언론 통폐합 때 만들어진 그 수치스러운 체제를 극복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진짜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정필모 위원님.

○정필모 위원 윤두현 위원님 생각에 상당 부분 동의하고 굉장히 옳으신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영방송의 개념 정리가 사실 방송법상에 안 돼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혼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전반적인 미디어 관련된 법들을 손질하면서 분명히 공영방송의 개념을 다시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공영방송은 분명히 얘기하지만 국영방송하고 다릅니다. 국영방송은 말 그대로 집권한 정부의 정책을 홍보할 수 있어요. 지금도 KTV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런 식의 정책을 쓰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은 특정 정권이나 특정 정파를 위해서 존재하는 방송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공적 서비스, 소위 퍼블릭 섹터와 특정 스테이트(state), 소위 정부를 위한 것하고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다른 나라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영방송에 대한 개념 정립이 법에 안 돼 있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공영방송에 대한 공유된 가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민정 위원 저 질문할게요. 방통위에.

○소위원장 조승래 예, 하셔도 돼요, 고민정 위원님.

○박성중 위원 마지막으로 저도 추가로 한 번 할게요.

○소위원장 조승래 예, 고민정 위원님 먼저 하시고.

○고민정 위원 일단은 이 법안들에 대해서 정부 의견은 없고 그냥 논의합시다 해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 의견들도 궁금하기는 한데, 지금 국회가 8명이고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이것도 결국 다 정치권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4명 해서 총 12명이 정치권 안에 있는 사람 몫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25인 중에서 어쨌든 절반입니다. 전체 포션을 뺏으로 가든 그것은 나중에 논의하더라도 절반인데, 저는 정치권의 몫은 최소 3분의 1까지

는 떨어뜨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안형환 글썽요, 이 안에 대해서는 제가 정부 측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방금 질문 주신 이 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내린 결론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제 의견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다마는 정치권과 국회를 좀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 배제가 국회 배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국회만이 선출된 권력으로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공영방송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주인이어야 됩니다. 사영방송이야 주주가 주인이겠지만요. 그런데 국민이 공영방송의 주인이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떤 국민이어야 되는가? 그 국민의 대표성을 누가 인정할 것인가라고 한다면 결국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그것을 대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8명, 4명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과연 어떤 국민을 누가 대표할 것인가의 문제를 먼저 정리를 하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게 국회의원이라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그 사람들만이, 즉 여기 안에 있는 300명만이 국민들을 다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안형환 예, 그래서 다른 국민도 있는데 어떤 국민이 국민 전체를 대표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방통위에서는 국회의원들을 최대한 많이 늘리는 게 낫겠다, 정치적 후견주의를 그냥 명문화하는 게 낫겠다고 보시는 건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안형환 그러니까 정치적 후견주의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이것을 국회의 대표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른 시각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박성중 위원님.

○박성중 위원 계속 이야기가 서로 헛도는데 어느 정도 결론은 대략 나온 것 같고, 여하튼 우리 위원장이 빨리 그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저희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25인 운영위원회는 야당의 안이다, 아직 우리 여당에서 받아들인 것도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좀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자체의 당론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떤 안이 논의될지는 모르겠지만 대표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니까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지 우리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20대 때 민주당에서 11명의 특별다수제를 주장했습니다, 방송법.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바로 이게 그냥 사문화되고 안 하다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또다시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야의 공수가 계속 바뀌어 왔다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하자.

민주당도 자기들이 정권 잡을 때는 가만있다가 우리가…… 그때 제가 이것 주장을 했습니다. ‘13인 해서 특별다수제 하자, 너희들이 주장했으니까. 그리고 대신 특별다수 3분의 2 하지 말고 60%로 하자. 한 사람만 데리고 가면 바뀔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하자’ 하는 안까지 제가 내밀히 제시를 했습니다. 특별다수제는 원래 야당이 제시했던 안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협상의 조건으로 그런 쪽까지 이야기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서로의 자세를 전향적으로 가져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때 제시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한 번도 거론이 안 됐거든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도 한 3년 정도 밀려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국영방송·공영방송 다 구분합니다. 세계 각국은 공영방송이나 국영방송의 그런 개념을 하나에 묶고 나머지는 전부 민영방송으로 다 묶었는데요. 공영방송 되면 최소한 공정하게 방송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 진영만 가지고 방송한다면 이건 공영방송이 아니지요. 그런 차원에서 가능한 그런 걸 확보할 수 있도록……

100% 중립은 못 지킬 겁니다. 40 대 60이든 아니면 반론권을 주든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MBC라든지 특별히 말해서 많은 방송들이, 공영방송들이라든가 그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말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과방위가 그래도 제일 앞서가는 부

서인데 우리가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당론을 한번 구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달라 이런 말씀……

○소위원장 조승래 그러면 김영식 위원님.

마지막 또 혹시 하실 얘기는…… 허은아 위원님까지.

김영식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김영식 위원 조금 전에 윤두현 위원님이나 박성중 위원님이나 다 하신 말씀들은 언론의 공정성 부분이고 어떻게 우리가 담보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제도화하는 부분에서 지금 법안이 상정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라온 법안들이 나름 다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나 여야가 보는 시각은 그 법안에 대해서 좀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여태까지 공수가 바뀌는 과정에서 생각이 다 달랐고, 조금 전에 윤두현 위원님께서 방송법이 1980년대에 만들어졌을 때의 그런 부분들을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고, 언론의 좌경화·우경화 그걸 떠나서 편향성 부분들이 최소화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편향됐었는가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치권에 줄을 서면 승진하는 체제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들이 언론 이런 쪽에 정말 공정한, 실력으로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내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만 만든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을 하면서……

매일 이렇게 싸우는 모습들이 본론이 되고 또 편향성을 하면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하다 보면 결국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한테 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중요한 것은 모든 분들이 원하는 것은 뭔가 하면 언론이 공정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들자 이 부분은 다 공감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들을, 법안이 나왔는데 이건 우리 것만 하자라고 주장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생하니, 우리 원칙은 알고 계실 거고 우리가 원칙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논의를 하고 길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을 제가 드립니다.

그렇게 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소위원장 조승래 알겠습니다.

허은아 위원님.

○허은아 위원 저도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 반복드리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그래도 3년 동안 과방위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조승래 위원장님이 지켜보셨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정필모 의원이 진심으로 공영방송이 제대로 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2년 동안 법안을 발의했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에 대해서는 케이스천이 있었는데 오늘 또 말씀하셨을 때 ‘열어 놓고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셨고 여야가 함께 생각하는 그 목표달성으로 가는 것, 진짜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답게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저는 공영방송 개념에 대한 정리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시민단체 참여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 선출된 저희 의원들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제도든지 결국은 제도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최적의 제도를 우리가 선택하는 과정이고. 그런데 그 선택의 시점이라는 것들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선택할 것이냐? 최적의 안이라고 하더라도 실기를 하게 되면 그 최적의 안이 최악의 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원칙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벌써 박성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다수제 안 같은 경우에도…… 야당은 항상 특별다수제 안을 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특별다수제는 다 동의하는 거지요. 특별다수제를 3분의 2로 할 거냐 60%로 할 거냐 그것은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일단은 특별다수제 그 부분은 합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사회나 운영위원회나 명칭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요.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그리고 정치적 후견주의는 반대하지만 그래도

대표성을 갖는 국회가 책임감 있게 추천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 다 공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인원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약간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추천 경로를 다양화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추천 경로를 다양화하는데 그게 특정이념이나 특정, 소위 정치조직과 관련돼 있는 분들이 추천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몇 가지 원칙들은 오늘 다들 공감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어쨌든 원칙으로 해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차제에 공영방송에 대해서, 공영방송의 정의 부분부터 해서 논의를 해 보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사 구성이라든지 사장 선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현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공영방송의 정의뿐만 아니라 방통위에서도 전체적으로 방송법을 통합미디어법으로 개편한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안형환 예,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그런 것과 공영방송의 관계 문제는, 이게 다 종합적으로 같이 고민해야 될 주제기 때문에 그것은 방통위가 그동안 준비해 왔던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국회와 함께 논의해 나가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박성중 의원안과 허은아 의원안은 개인 의견이기 때문에 당론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당론 모으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리고 굳이 당론이 없어도 돼요. 꼭 당론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당론이라는 게 무슨 지고지순의 헌법도 아니고, 정필모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당론이라 하더라도 당론 변경 절차를 거치면 금방 거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적어도 책임감 있게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수용을 한다고 판단하니까 정필모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론 여부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서로 소신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소위를 운영하면서, 그때 국민의힘 위원들은 안 계셨습니다만 법안소위는 월 3회 이상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회의를 하기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 주에도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논의를 하고……

○**윤두현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조승래** 윤두현 위원님.

○**윤두현 위원** 제가 위원장 말씀 중에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저희 당 의원 중에 개인적으로 특별다수제를 이야기한 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다 같이 거기에 동의했다 그것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예, 그러니까요. 제가 100% 다 동의했다는 건 아니고, 특별다수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서로 여야를 한 번씩 경험을 해 본 입장에서 같이 법안을 냈던 것이 있고 현재 제출돼 있는 법안에도 여야 의원들이 공히……

○**윤두현 위원** 아니요, ‘여야 공히’라 그러면 여당과 야당의 동의는 되지만 특정 정당의 모든 사람이 동의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다수제 반대입니다.

○**소위원장 조승래**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윤두현 위원** 그래서 혹시나 그게 혼란이 있을까 싶어서……

○**소위원장 조승래**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제출된 법안에 특별다수제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특별다수제에 대해서 윤두현 위원같이 ‘나는 반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건 소신의 영역이니까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정도 하고 다음주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회의 날짜를 다시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법안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회안의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에 관하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은 추후 일정을 협의해서 정해지는 대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방송법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까 위원님들께서 신속하게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당의 필요한 절차가 있으면 밟아 주시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과기부 제2차관과 방통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고민정	김영식	박성중	박찬대
윤두현	윤영찬	정필모	조승래
허은아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전문위원	이지민
입법심의관	김충섭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박윤규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김정삼		
방송진흥정책관	김정렬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안형환		
기획조정관	배중섭		
이용자정책국장	김재철		